

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09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 운영 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나.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8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불임
- 다. 합의 : 완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(2013. 8. 14~ 9. 3) 결과 : 제출된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
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
4. 위원이 제8조의2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u></p> <p>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 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의3(위원의 해촉)</u> 시장은 위원 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할 때 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. 위원이 제8조의2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수반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『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5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이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울 때)에 해당된다.

3. 미첨부 사유

제정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

4. 작성자

-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조 용 민